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국고보조 시범사업 사업대상 변경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울산광역시 ○○○○센터에서는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계층에 적합한 농업 기술보급을 통한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2016년 도시농업 수요 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을 “시군농업기술센터”로 한정하여, 도시농업의 활발한 사업추진 및 관리가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선정기준으로 규정하였으며, 시범요인은 Master Gardener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텃밭·정원 도시농업 공간조성, 도시농업 활동(행사, 벤치마킹) 등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센터는 사정의 변경으로 2016년 도시농업 수요 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사업대상과 시범요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2016년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시범사업 사업대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텃밭농장 운영자”로 변경하였으며, 시범요인은 관내 1호 민영도시농업농장 조성 및 등록 운영, 도시농업농장 모델화 및 도시농업교육 현장실습장(교육장) 조성 등으로 변경 2016. 2. 29. 공고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주의] 농촌지도 국고보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범요인을 준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